

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4월 1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4월 14일

3. 개정이유

- 대형·특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 및 단양소방서 개소 등 기구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소방본부 분장사무 신설 (안 제14조)
 - 광역119특수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
- 소방서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 (안 별표2)
 - 제천소방서 관할구역 : 제천, 단양 일원 → 제천시 일원
 - 단양소방서 관할구역 : 단양군 일원 (신설)

5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과 단양소방서 신설을 위한 개정으로서 주요 내용은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 제정('16.3.3.)에 따라 테러·유해화학·지진 등 대형·특수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광역119특수구조단 설치를 위한 분장사무를 신설하고, 단양소방서 신설(2017. 9)에 따라 제천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제천·단양 일원에서 제천일원으로 하고, 단양소방서의 관할구역을 단양 일원으로 하는 것입니다.

금번 개정조례안은 테러·유해화학·지진 등 대형·특수재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광역119특수구조단을 설치하고, 단양소방서 신설(2017. 9)에 따라 종전 제천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제천·단양 일원에서 제천시일원으로 단양소방서의 관할구역을 단양군일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,

광역119특수구조단 설치로 대형·특수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출동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, 단양소방서 신설에 따라 각종 화재 및 응급구조에 있어 보다 신속한 출동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적합한 기구조정이라 생각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